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4.2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4월 15일 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4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4월 28일

(제147회임시회 제4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관리국장 조신행)

가. 제안이유

-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, 공무원여비규정 (대통령령 제15680호, '98.2.24) 이 제정됨에 따라,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여비의 종류에 준비금 등을 첨가하고, 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표기 (안 제2조)
- “국내여비규정” 및 “국외여비규정”을 준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을 준용 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-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대비표